

『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기존 자활기금의 제한적인 사용에서 벗어나, 탄력적인 기금 운용으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근거 법령 변경(안 제1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자활기금 조성 재원에 관한 용어 변경(안 제2조)
 - 가. 당초 : 금융기관, 생업자금, 공공근로 등
 - 나. 변경 : 금융회사등, 사회복지기금, 자활근로 등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 명칭 변경(안 제3조, 제4조)
 - 가. 당초 : 기초생활보장기금 · 변경 : 자활기금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의 관리·운용 조문 정비(안 제3조)
 - 가. 기금의 세입세출 외 처리 근거 법령 변경
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 → 「지방재정법」 제34조제3항
 - 나. 기금 일몰제도를 반영한 기금 존속기간 신설 : 2021년 12월 31일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기금의 용도 추가(안 제4조)
 - 가. 용어변경 : 자활공동체 → 자활기업
 - 나. 용도추가 : 자활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
- 중학생 무상 교육에 따른 장학금 지원대상 변경(안 제5조)

가. 당초 : 중·고등학생, 대학생

나. 변경 : 고등학생, 대학생

- 자활기업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신설(안 제10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규정 등 정비(안 제11조 ~ 제13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용어 정비, 전세점포 임대지원 규정 및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기한 신설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으로 신설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